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9. 07.
 개정 2019. 11.
 개정 2020.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혁신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우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혁신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과제”라 함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영역별(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글로벌)) 프로그램 및 세부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과지표”라 함은 혁신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핵심성과지표, 자율성과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혁신사업 기획위원회) ① 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사업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사업 기획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교무위원 8인과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대표와 직원대표 각 1인 및 2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특임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 11. 1)(개정 2020.11.1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혁신사업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지원사업 관련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혁신지원사업 연구 및 실무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혁신지원사업 예산 조정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5. 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혁신사업 자체평가연구위원회) ①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사업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는 연 2회(중간, 최종)로 시행한다. 다만 사업 운영상 연 1회 시행 할 수 있다.

③ 혁신사업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교무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⑤ 혁신사업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실행과제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행과제의 이행 여부 점검
2. 혁신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및 목표달성 점검
3. 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의 비전 실현의 방향성 점검

- 4. 자체평가결과 환류 방안 제시
- 5.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혁신사업 실무위원회) ① 혁신지원사업의 세부프로그램별 사업 운영 및 성과지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사업 실무위원회는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행정부서의 팀장급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혁신사업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 1.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세부내역)별 사업 운영 및 상호 협의
- 2.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 3.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관리부서) ① 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성과지표 관리를 위하여 교육혁신원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혁신원을 대표하고 교육혁신원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원에 기획운영팀과 사업회계팀을 둔다.

제8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② 사업비 중앙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1. 사업추진부서와 사업관리부서의 분리
-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3.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성과관리) 혁신지원사업의 사업추진부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링) ①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② 사업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제11조(외부평가) 혁신사업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지원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혁신사업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